

증권계좌개설 대행업무 제휴계약서

주식회사 하나은행 (이하 “은행”이라 한다)과 00 증권 주식회사 (이하 “증권”이라 한다)는 증권계좌개설 대행업무 제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목적)

이 계약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 42 조, 동법 시행령 제 45 조, 금융투자업규정 제 4-3 조 이하 규정,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증권”이 “은행”에게 금융투자상품 계좌 개설 대행 및 실명확인 업무 등을 위탁함에 있어서 수탁자의 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 재위탁 금지, 계좌개설고객(이하 “투자자”라 한다) 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등과 관련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증권계좌”라 함은 “증권”의 고객이 “증권”과 주식위탁(채권 포함), 선물옵션, 수익증권 등을 거래하기 위하여 “증권”에 개설하는 계좌를 말한다.
- “계좌개설 대행업무”라 함은 “증권”과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하고자 하는 고객이 “증권”의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지 아니하고 “은행”의 영업점에서 실명확인절차를 거쳐 “은행”의 은행계좌와 연계된 “증권계좌”的 개설을 “은행”이 대행하는 업무를 말한다.
- “모계좌”라 함은 각종 자금이체 처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증권”이 “은행”에게 개설한 예금계좌를 말한다.
- “수수료결제계좌”라 함은 “은행”과 “증권”간에 발생한 각종 수수료의 정산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증권”이 “은행”에게 개설한 계좌를 말한다.

제 3 조 (업무범위)

① 이 계약에 의하여 “은행”이 처리하여야 할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증권”의 고객에 대한 은행 요구불계좌의 개설
- “증권계좌” 개설 대행과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업무
 - 고객의 실명확인 대행 및 “증권”이 정하는 계좌개설 필요서류 징구대행
 - 계좌개설 신청서 및 각종 서비스 이용신청서 접수 대행
 - 계좌개설 관련 고객정보와 서비스 신청내용의 전산입력 및 전송

3. “증권” 으로부터 의뢰 받은 각종 자금이체 등의 처리
 4. ”은행” 의 창구서비스(전자금융포함)를 통한 “증권” 고객의 증권계좌로 자금이체등의 처리
 5. 전 제 1호 내지 제 4호와 관련한 업무
- ② 이 계약에 의하여 “증권” 이 처리하여야 할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증권계좌” 개설 업무
 2. 각종 자금이체 처리명세의 전송
 3. 전 제 1호 내지 제 2호와 관련한 업무

제 4 조 (전산시스템의 구축)

- ① “은행” 과 “증권” 은 제 3 조에서 정한 업무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전산시스템을 개발 및 구축하여야 한다.
- ② 이 계약의 업무와 관련한 전산운용의 세부사항은 “은행” 과 “증권” 의 전산 실무 담당부서장이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른다.

제 5 조 (비밀유지)

“은행” 과 “증권” 은 업무 수행 중, 인지 또는 획득한 고객의 정보 등 제반 사항을 이 업무수행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하거나 외부에 유출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관련 법령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6 조 (계좌의 지정)

- ① “증권” 은 “은행” 이 제 3 조에서 규정한 계좌개설 대행업무 수행을 위한 “모계좌” 와 “수수료결제계좌” 를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구분	예금주	예금과목	계좌번호
모계좌	00 증권		
수수료결제계좌	00 증권		

- ② “모계좌” 또는 “수수료결제계좌” 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증권” 은 그 내용을 “은행” 에게 서면으로 통지 하여야 하며, “은행” 이 전산 등록을 마친 때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 7 조 (신청장소 및 이용대상)

- ① “은행” 의 업무수행장소는 “은행” 의 영업점으로 한다
- ② 이 계약에 따른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공한다.
 1. 해당 고객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내국인으로서 개인일 것
 2. “은행” 에게 요구불계좌를 개설할 것
 3. “증권계좌” 가 요구불계좌와 연결될 것
- ③ 요구불계좌와 연결된 “증권계좌”에 대한 실명확인은 “증권” 을 대신하여 “은행” 이 하기로 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은행” 이 지기로 한다.

제 8 조 (계좌개설 대행업무 제공)

- ① “은행”은 고객 본인 또는 대리인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 계좌개설 대행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본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단, 선물옵션계좌의 경우에는 고객 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대리인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대행하지 아니한다.
- ② “은행”의 은행계좌의 예금주와 증권계좌 투자자는 동일인이어야 한다.
- ③ “은행”이 고객으로부터 “증권계좌”的 계좌 개설 신청서 및 실명확인증표를 제출받아 신청 내용을 전산으로 입력하여 “증권”에게 전송하면 “증권”은 “은행”로부터 전송 받은 고객정보에 의해 즉시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은행”에게 통보한다.
- ④ 증권계좌 개설 신청서 및 실명확인증표는 “은행”的 각 영업점에서 “은행”的 예금거래신청서 보관방법에 준하여 보관하기로 한다. 다만 “증권”이 요청하는 경우 “은행”은 해당 계좌 개설 신청서 원본 또는 사본을 “증권”에게 제공 할 수 있다.
- ⑤ “은행”은 “증권”이 제공하는 증권계좌 약관 및 서비스이용 약관과 이용설명서를 “은행”的 영업점 창구에 비치하기로 한다.

제 9 조 (자금의 이체)

- ① “증권”은 “은행”的 본 계좌 개설 대행업무와 관련하여 고객으로부터 수납 또는 지급하여야 할 자금에 대한 이체명세를 작성하여 “은행”과 “증권”이 미리 정한 방법에 따라 “은행”에게 전송하기로 한다.
- ② “은행”은 “증권”이 전송한 이체의뢰명세서를 고객과 “증권”的 정당한 거래에 따른 입출금 의뢰로 간주하고, 별도의 확인 절차 없이 처리하기로 한다.
- ③ 고객의 요청에 의하여 “증권”이 자금의 이체를 요청하는 경우 “은행”은 “증권”的 모계좌의 지급 가능금액 범위 내에서 이체하기로 하며, 지급 가능금액은 지급시점에서 현금화된 자금으로서 타점권은 제외한다. 다만, 자기앞수표로 입금된 경우에는 교환결제 전이라도 지급할 수 있기로 하되, 지급한 자기앞수표가 부도 반환된 때에는 “은행”은 고객에게 부도사실을 통보하여 부도금액을 입금시키도록 하여야 하며, 만일 고객에게 연락이 안되거나 기타의 사유로 부도대전을 정리하지 못하였을 경우 “은행”은 동 내용을 즉시 “증권”에게 유선통보하고 “증권”的 “모계좌”에서 예금청구서 및 통장 또는 수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해당 부도금액을 출금하여 정리하고 그 처리 결과를 “증권”에게 통보하기로 한다.
- ④ “증권”的 요청으로 “은행”이 정당하게 처리한 이체금액과 관련하여 고객과 분쟁 발생시에 “증권”은 신속히 이를 처리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은행”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⑤ 전산장애, 통신장애 및 회선장애 등으로 인하여 자금이체를 할 수 없는 경우

에 처리방법은 “은행”과 “증권”이 별도로 정한다.

제 10 조 (수수료)

① 이 계약에 따른 대행업무 제공과 관련하여 “증권”이 부담하여야 할 수수료 및 그 지급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계좌개설 대행수수료는 다음 각목과 같다.

가. 계좌개설 대행수수료는 건당 ()원(인지세 포함)으로 한다.

나. 계좌개설 대행수수료는 “증권”이 계좌 개설을 완료한 건에 한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2. 자금이체 수수료는 다음 각목과 같다.

가. 고객이 “은행”의 창구서비스(전자금융 포함)를 이용하여 “증권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경우 및 “증권”의 요청에 의하여 “증권계좌”로 입금 자체 및 출금 자체하는 경우에는 건당 ()원으로 한다.

나. 자금이체 수수료는 자금이체가 완료된 건에 한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3. 계좌관리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가. 위탁계좌 및 선물옵션계좌

“증권”은 매월 기준으로 매매가 발생한 거래계좌에 대하여 계좌당 ()원을 수수료 인출일에 “은행”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나. 수익증권계좌

이 계약에 따라 개설된 증권계좌를 통하여 수익증권의 매매거래가 있는 경우 “증권”은 그로 인한 수입수수료중 제반 비용을 제외한 순수입수수료의 ()%를 “은행”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4. 제신고 대행수수료는 다음 각목과 같다.

가. “증권계좌” 비밀번호 변경 대행업무를 “은행”이 처리하는 경우 수수료는 처리 건당 ()원으로 한다.

나. 제신고 대행수수료는 “은행”의 직원이 전산처리 완료한 건에 한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② 제 1 항 각 호의 수수료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정산한다.

1. ”은행”은 제 ①항 1 호, 2 호 및 4 호의 수수료 명세(계좌개설수수료, 자금이체 수수료, 제신고 대행수수료)를 상호 협의한 양식으로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익월 8 일(휴일인 경우 익영업일)까지 “증권”에게 통보한다.

2. “증권”은 제 ①항 3 호의 수수료명세(계좌관리수수료)를 상호 협의한 양식으로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익월 8 일(휴일인 경우 익영업일)까지 “은행”에게 통보한다

3. ”은행”은 월중 발생한 수수료를 “증권”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매월 말일 기준으로 익월 15 일(휴일인 경우 익영업일)에 “증권”的 “수수료결제계좌”에서 예금청구서 및 통장 또는 수표 등에 의한 별도의 청구절차 없이 인출하기로 한다.

제 11 조 (재위탁 금지)

“은행”은 본 계약에 의해 “증권”으로부터 위탁 받은 업무를 제 3 자에게 재위탁 할 수 없다

제 12 조 (직무관련 정보의 이용금지 등)

- ① “은행”과 “증권”은 “자본시장법” 제 42 조 제 10 항에 의거 업무위탁으로 인하여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 3 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은행”은 “자본시장법” 제 42 조 제 10 항에 의거 “증권”이 매매한 금융 투자상품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여 줄 것을 사전 약속하는 행위
 2. “투자자”가 입은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후에 보전하여 주는 행위
 3.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보장할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4.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사후에 제공하는 행위

제 13 조 (고객확인의무)

- ① “은행”은 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중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객확인의무를 이행하고, “증권”이 요청하는 경우, 고객 신원정보 및 기타 고객확인과 관련된 문서사본 등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 ② 제 ①항에 따라 “은행”에 의하여 고객확인의무가 이행되는 경우, 동 의무이행 관련 최종책임은 위탁자인 “증권”에 있다.

제 14 조 (감독, 검사 수용의무 등)

“은행”과 “증권”은 상호 위수탁한 업무와 관련하여 금융감독당국, 감사인 등 의 검사를 거부하거나 회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15 조 (투자자 보호 의무)

- ① “은행”이 이 계약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투자자에게 가한 손해를 “증권”은 “은행”의 사용자로서 배상할 책임이 있다.
- ② 제 1 항의 경우 “증권”은 “은행”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③ “은행”과 “증권”은 투자자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는 등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및 관계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제 16 조 (업무위탁에 따른 위험관리 등)

- ① “은행”과 “증권”은 업무 위수탁에 따라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는 등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한 이해상충방지의무, 이해상충과 관련된 불공정 행위 금지, 이해상충관리 의무 등 상호간 구축한 이해상충방지체계를 준수해야 한다.
- ② 업무위탁에 따른 전산시스템 개발 및 구축 후 운영에 따른 위험발생의 처리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금융투자업규정 제4-4조 제2항에 의거 “은행”과 “증권”이 별도로 합의한 비상 전산시스템(“은행”과 “증권” 양 당사자간 사전, 사후 보고체계를 갖추는 등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백업시스템) 지침에 의해 해결한다.

제 17 조(지적재산권 등의 이용조건)

- ① 이 계약에 의하여 전산망 등으로 송·수신되는 투자자의 계좌와 관련한 자료는 “증권”의 소유로 하고, 이 계약에 의한 “은행” 또는 “증권”의 고유업무로 인하여 새로이 생성되는 정보 등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각자의 권리로 한다.
- ② 이 계약의 업무를 위한 전산망 구축에 필요한 프로그램개발, 회선 및 기기 등 물적설비의 설치 및 이용은 각자의 비용으로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서면에 의한 합의 시 상호 이용이 가능하다.

제 18 조(보험가입 등)

이 계약에 따른 영업활동으로 투자자 또는 계약당사자 일방에게 손해 등을 가할 경우를 대비하여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금융투자업규정 제4-4조 제2항에 의거 ‘은행’과 ‘증권’은 영업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제 19 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 감독에 관한 사항)

“증권”은 “은행”에게 위탁한 업무와 관련된 계약체결사항에 대한 “은행”的 이행여부에 대해 매분기 1회 이상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 등의 측면에서 문제점이 발견되거나 문제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은행”에게 업무개선 요청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 20 조(수탁자의 책임한계에 관한 사항)

“은행”은 “증권”으로부터 위탁 받은 업무 이외의 행위로 인한 부분에 대해서는 “증권”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 21 조 (면책)

- ① “은행”과 “증권” 각각은 당사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통신기기 및 회선장애 또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한 업무처리의 지연이나 불능에 대하여 그 책임을 면하여, 쌍방이 합의하거나 정한 방법에 따라 정당하게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

도 그 책임을 면하기로 한다.

- ② “은행”과 “증권”의 업무를 주관하는 감독기관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본 계약이 중단되는 경우에는 “은행”과 “증권”은 본 계약중단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로 한다.

제 22 조 (손해배상)

이 계약에 따른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고객의 손해배상 요구 등이 있는 경우 “은행”과 “증권” 중 귀책사유 제공 측의 책임 하에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 23 조 (고지의무)

“은행” 또는 “증권”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은행”의 계좌개설 대행 업무 제공이 중단되는 경우, 업무 중단에 대한 책임 있는 당사자가 이용고객에게 고지하기로 한다.

제 24 조 (계약의 변경 및 해지)

- ① 이 계약을 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3 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제 1 항의 통지를 받은 당사자가 통지 받은 날로부터 1 개월 이내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이의 제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동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통지 받은 날로부터 3 개월 후에 별도의 절차 없이 계약변경 또는 해지하기로 한다.

제 25 조 (효력의 발생)

- ① 본 계약은 체결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다. 다만, 제 10 조 수수료 사항은 영업개시일로부터 6개월 후부터 재협의가 가능하다.
- ②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은행”은 본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그 사실을 “증권”에 통지한다
- ③ 제 ② 항의 통지에는 “증권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연장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 내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본 계약이 1년간 연장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포함하기로 한다.
- ④ “증권”이 제 ② 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연장을 원하지 않음”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본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연장된다.

제 26 조 (기타)

- ① “증권”은 이 계약에 따른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고객에게 반드시 알려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및 배포하여야 할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은행”과 협의하여 “은행”的 영업점에 게시 및 배포하기로 한다.
- ②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및 계약내용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상호합의에 따르며, 상호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상사에 관한 일반 관례에 따르기로 한다.

- ③ 이 계약에 의한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각 계좌에 대한 개별적인 업무처리는 대상계좌의 거래약관을 적용한다.
- ④ 회선장애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방법으로 자금이체를 의뢰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은행”과 “증권”이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르기로 한다.
- ⑤ “은행”과 “증권”은 이 계약에 따른 업무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하여 상호 협조 하기로 하며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하였으나 이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부속계약에서 정하기로 한다.

제 27 조 (관할법원)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송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이 계약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 부를 작성하고 “은행”과 “증권”이 상호 기명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은행]
주식회사 하나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 가 101-1 번지

은행장 0 0 0 (인)

[증권]
00증권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대표이사 0 0 0 (인)